제29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·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

서울형 키즈카페 화곡3동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3. 6. 27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 래·복 지 위 원 회

서울형 키즈카페 화곡3동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2023년 6월 27일 전문위원 권 오 숙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: 2023 - 65

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
다. 제출일자: 2023년 6월 1일

라. 회부일자: 2023년 6월 1일

2. 제안이유

「서울형 키즈카페」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운영 사무를 경제적 효율성,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성 등이 높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,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○ 시설개요

시설명	소재지	규모(m²)	수용인원	비고	
서울형 키즈카페	강서구 강서로 231, 2층	326m²	26명	기부채납	
화곡3동점	(화곡동, 우장산역해링턴타워)		(만2세~미취학아동)	시 설	

○ 위탁사무내용

-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3동점 관리,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- 시설관리: 시설물 유지보수, 하자관리,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등
- 조직관리: 조직 및 인사관리, 시설운영위원회 관리 등
- 예산관리: 예산·회계·결산 관리, 구매·계약 관리 등
- 사업관리: 놀이 공간, 놀이 프로그램 운영, 아동 복지·보호·특화 사업 관리 등
- 물품 등 기타관리: 물품관리, 각종 홍보, 협력기관 발굴 등
- 위탁기간: 5년
- 수탁자 선정방식: 공개경쟁모집에 따른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선정
- 소요예산: **총 244,452천원** (2024년 기준)

(단위: 처원)

 합 계	인건비	운영비	관리비	비고
244,452	164,052	20,400	60,000	- 시비: 123,863 - 구비: 120,589

나. 추진일정

- 2022년 12월: 서울형 키즈카페 공간선정 3차 심의 개최(서울시)
- 2023년 1월: 서울형 키즈카페 공간 선정 확정
- 2023년 3월: 서울형 키즈카페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
- 2023년 5월: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심의
- 2023년 6월: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(제297회 정례회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0조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6조, 제7조, 제9조

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2023년 12월 개소 예정인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3동점의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 으로
- 「아동복지법」제53조에서 '지방자체단체장은 아동이 항상 이용할수 있는 아동전용시설¹)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'라고 규정하고 있고, 그 일환으로 계절이나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아동의 놀이권²)을 확보하고자 하는 '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사업'에 따라

2) 「유엔 아동권리협약」제31조

^{1) 「}아동복지법」제52조(아동복지시설의 종류)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 7. 아동전용시설: 어린이공원, 어린이놀이터, 아동회관, 체육·연극·영화·과학실험전시 시설, 아동휴게숙박시설, 야영장 등 <u>아동에게 건전한 놀이·오락,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</u>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^{1.} 당사국은 <u>휴식과 여가를 즐기고,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, 문화</u>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.

- 우리 구에도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(2023. 3. 29.)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
- 또한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3동점의 운영사무는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³)의 기준에 따라 민간 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되고, 해당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지난 5월 12일 실시한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'적정' 심의완료 하였으므로
-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아동에 대한 이해도, 놀이 및 돌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서울형 키즈 카페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
- 아울러 집행부서에서는 향후 위탁체 선정 시 경험이 풍부하고 안정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이 선정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, 지속적인 지도·감독을 통해 구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심하고 이용할수 있는 놀이 공간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

^{3) 「}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^{1.} 여성·청소년·아동·가족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
참 고 비용추계서

- 1. 비용의 발생요인: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3동점 민간위탁
- 2. 비용추계의 전제: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3동점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
- 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	2차년도 (2024년)				합	계
세출	사업운영비	15,371	244,452	249,374	254,443	259,664	1,023	3,304

- 4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: 244,452천원
 - 인 건 비: 164,052천원
 - 시 설 장: 4.004천원 × 12월 = 48.048천원 (시:구=3:7)
 - 돌봄요원: 3,249천원 × 12월 = 38,988천원 (시:구=10:0)
 - 운영요원: 3.209천원 × 12월 = 38.508천원 (시:구=3:7)
 - 안전관리요원: 3,209천원 × 12월 = 38,508천원 (시:구=10:0)
 - 운 영 비: 20.400천원
 - 시설운영비: 1,700천원 × 12월 = 20,400천원 (시:구=10:0)
 - 관 리 비: 60.000천원
 - 놀이기구 관리비: 5.000천원 × 12월 = 60.000천원 (시:구=0:10)
 - 5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합 계
합	계	15,371	244,452	249,374	254,443	259,664	1,023,304
Ŋ	비	10,322	123,863	126,967	130,164	133,457	524,773
구	Ы	5,049	120,589	122,407	124,279	126,207	498,531

6. 작 성 자: 생활복지국 가족정책과 (담당자: 행정7급 박성근 2600-6756)

참고 관계 법령

□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- 제10조(위탁운영) ① 구청장은 놀이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놀이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□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-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 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 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-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
-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-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여성·청소년·아동·가족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- 제7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 임사무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.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(이하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제9조(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(이하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구청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,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
- 2. 공개모집 외의 방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
- 3. 그 밖에 민간위탁을 위해 필요한 사항